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2. 12. 12 (수요일), 14:00 ~ 18:4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노중국, 강태호, 김권구, 김상현,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상해, 이재근, 이태진,
채미옥, 최성락, 홍승재(이상 13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문화재(사적) 지정 등>

-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 2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 3 사적 제431호 홍성 의사총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등>

- 4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2차))
- 5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1)
- 6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2)
- 7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외 남산케이블카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 8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
- 9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주변 박물관 증축
- 10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등 주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 11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 케이블선 지중화공사
- 12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외 정비사업
- 13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로 포장
- 14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15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주변 양식장 조성
- 16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등 주변 가로조성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17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내 오수처리시설 증축
- 18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2동) 신축
- 19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식묘군 주변 단독주택(4동) 신축
- 20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21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22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 골프연습장 신축
23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건물(공장) 신축
24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25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등 주변 마을진입로 포장
26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 단독주택 건축(1)
27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 단독주택 건축(2)
28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폐총 주변 공유수면매립 등(허가사항 변경허가)
29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내 연못 매립 및 수목 정비
30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31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주변 나주천변 저류지 조성
32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33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34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 유적 내 부여문화센터 외부공간 조성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35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통신용전주 설치
36	사적 제461호 서울 청계천 유적(오간수문지) 내외 횡단보도 설치
37	사적 제471호 완주 위봉산성 주변 풍류학교 신축
38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고분공원 조성
39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내 배수로 정비
40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41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42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검토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2	파주 율곡 이이 유적 사적 지정 검토	
3	대전 미륵원지 사적 지정 검토	
4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신설고속도로 교량경관 검토	
5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보고사항】		
1	사적 제123호 창경궁 내 조립식 매표소 설치 사업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12-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9필지 1,168㎡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10.10)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2.10.19.(문화재청 공고 제2012-268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특별시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기지정 면적 : 684필지 292,902㎡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9필지 1,168㎡
 - 추가지정 후 면적 : 693필지 294,070㎡
- (4)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2.8.14, '12.9.6)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지하에 백제문화층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 따라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0-11	대	165	165		
2		148-21	대	112	112		
3		306-19	대	142	142		
4		87-18	대	102	102		
5		280-16	대	139	139		
6		131-57	대	102	102		
7		130-39	대	152	152		
8		140-4	대	99	99		
9		126-77	대	155	155		
합 계				1,168	1,168		

2.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릉 초당동 유적과 인접한 88-3번지 1필지 382㎡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10.10)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2.10.22.(문화재청 공고 제2012-270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추가지정 구역 토지 매입 요청(토지 소유자)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초당동 유적(사적 제490호)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 등
- (3) 지정신청
 - 기존 지정면적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번지 등 16필지 58,908㎡
 - 추가지정 신청면적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8-3번지 1필지 382㎡
 - 추가지정 후 면적 : 17필지 59,290㎡
- (4) 지정사유
 - 88-3번지는 초당동 유적 고분의 부곽이 위치하고 고분 주위를 감싸는 주구가 연결되어 있어 초당동 유적과 동일선상에 있는 부지이므로 유적의 보존 관리를 위한 추가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12.09.14/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강릉 초당동 유적 연접지역인 초당동 88-3번지를 강릉 초당동 유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초당동 88-3번지는 2005년도 발굴조사 과정에서 2기의 수혈식 석곽묘와 1기의 제사유구가 확인되었으며, 1호 석곽묘가 서쪽의 88-3번지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는 유구임

- 이에 따라, 초당동 88-3번지는 84-2번지인 강릉 초당동 유적과 연계된 것으로, 선사시대 이래 삼국시대까지 강릉 지역의 신라사 연구 및 지방사 연구와 관련하여 강릉 초당동 유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추가 지정에 따른 유구보존과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주변의 필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토지소유자 의견(○○○)

- 본인은 은퇴 후 예전에 부모님이 사시던 곳에 집을 지어 살기 위해 1999년 9월 88-3번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적으로 지적된 84-2번지 토지와 연접한 관계로 개발행위는 물론 매매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88-3번지를 국가 지정문화재구역으로 편입하여 주시고, 동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람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신청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8-3	대	382	382			제2구역

3. 홍성 의사총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제431호 「홍성 의사총」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요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군에서 홍성 의사총(洪城 義士塚)의 명칭을 홍성 홍주의사총(洪城 洪州 義士塚)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10.10) 검토를 거쳐 명칭변경 예고
 - 지정 예고일 : 2012.10.19.(문화재청 공고 제2012-269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의사총(사적 제431호)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9 등
- (3) 신청내용
 - 명칭변경
 - 현행 : 홍성 의사총(洪城 義士塚)
 - 변경 : 홍성 홍주의사총(洪城 洪州義士塚)
 - 명칭변경 요청 검토배경
 - 고시에 '홍주의사총→홍성 의사총' 명칭 변경 사유로 원래 명칭 부여,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하여 변경됨을 명시
 - 그러나 타 시군 소재 문화재 명칭 변경 사례와 비교할 때 “홍성 의사총”으로의 명칭 변경은 원래명칭(홍주) 부여가 아닌 원래명칭 삭제 후 현재 행정구역 지역명 병기를 적용함
 - ‘홍주의병’의 역사적 의미 훼손 우려

- ‘홍성 홍주의사총’ 명칭이 갖는 의미
 -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 기준인 ‘원래명칭 부여’, ‘지역명 병기’에 부합
 - 1906년 홍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병오 항일의병의 정신 확인을 통한 ‘홍주 의병’의 역사적 의미 확인
 - 홍성지역과 인근 지역인 예산·청양 등지에서 의병에 참여한 순국선열들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 회복

라. 참고사항

(1) 사적 지정명칭 변경 추진경과

- 2009.6.10. : ‘09년 사적분과 제6차 회의 개최
 - ※ 사적 제240호 ‘마산외동선상패총’의 명칭변경 부의
 - ⇒ 사적 지정 명칭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전반적인 재검토 후 조정
- 2010.3.25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 계획 보고
- 2010.4.14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계획’ 사적분과에 보고
- 2010.7.20, 2010.9.8 : 사적분과 소위 검토
- 2010.9.8 : 사적분과 본위 심의(원안접수)
- 2010.10.13 : 사적분과 소위 검토
 - 원칙적으로 문화재명 앞에 지역명 표기
- 2010.11.10 : 사적분과 본위 심의
 - 통합지침 마련 후 시행필요, 지정명칭 개선은 소위 검토 후 본회의 검토
- 2010.12.22 : 사적분과 소위 및 본위
 - 동산, 건축, 사적, 근대문화재분과 등 합동회의를 통해 명칭 조정(안) 의견 조율 필요
- 2011.2.8 : 합동분과(동산, 건축, 사적, 근대분과) 소위
- 2011.2.9 : 사적분과 본위 심의
 - 기존 요지의 명칭에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 서울성곽 → 서울 한양도성, 홍주성 → 홍성 홍주읍성, 쌍산의소 → 화순 쌍산황일의병유적, 등
- 2011.4.1~4.30 : 사적명칭 개선안 지정예고 및 지자체 등 의견수렴
- 2011.5~6 :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심의
- 2011.7.28 : 사적 지정명칭 변경 고시(관보 게재)

(2) 지정명칭 변경 건의

<홍성군>

- 문화재청 내부지침에 의거 고시 제2011-116호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칭 변경을 고시하였으며 이 때 우리 군의 경우에도 홍주의사총의 지명이 변경 고시되었음
- ‘홍주의사총’이 원래 명칭 부여, 한글맞춤법(띄어쓰기) 적용에 따라 ‘홍성 의사총’으로 변경되었음
- 위와 같은 명칭 변경 중 ‘홍주의사총’의 ‘홍성 의사총’ 변경은 기준이 되는 원래 명칭 부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주의병’의 무덤이라는 역사성과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지정 명칭 변경을 통한 ‘역사적 성격 회복’이라는 목적에서도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음
- ‘홍주의병’의 명칭은 ‘홍주’가 홍성의 옛 지명일지라도 과거 홍주목 지역이었던 현재의 청양, 예산 등지의 사람도 참여하여 희생되었다는 측면과 당시의 지명 사용을 통해 역사적 성격을 부각한다는 점도 반영된 것임
- 그러다보니 ‘홍주의병’이 이미 역사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음
-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면 ‘홍주의사총’을 ‘홍성 의사총’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변경된 ‘홍성 의사총’의 명칭을 지역(행정구역) 명을 병기한 ‘홍성 홍주의사총’으로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함

<홍주의병유족회장>

- 문화재청에서 ‘홍주의사총’을 ‘홍성 의사총’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홍주의병’ 유족회 회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회 회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음
- ‘홍주의사총’이 홍주의병의 정신과 뜻을 기리는 장소인데 홍주의병에 대해 배려를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임. ‘홍성 의사총’이라할 때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이번 명칭 변경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잊게 하고 것임
- 우리 조상이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내려고 한 나라인데, 그들의 정신과 뜻을 후손인 우리가 잘못되게 해야 되겠는지요
- 그리고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이 지금의 지역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홍주의사총’의 명칭은 현재대로 사용하고 그 앞에 홍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봄. 그래서 ‘홍성 홍주의사총’으로 그 명칭이 갖는 의미와 정신을 나타낸다고 하겠음
- 우리 유족회는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은 ‘홍성 홍주의사총’임. 홍주의병 유족회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홍성 홍주의사총’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함. 이런 뜻을 회장인 제가 유족을 대표하여 작성 제출하니,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홍성문화원장>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명칭 변경을 하였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음. 그 중 우리 홍성의 자부심인 ‘홍주의사총’이 ‘홍성 의사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음
- ‘홍주의사총’은 홍주의병의 정신을 구현하는 곳이며, 우리 고장 홍성이 충과 절의의 공장임을 상징하는 우리의 자부심임
- ‘홍주의사총’이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될 때에는 우리의 얼과 정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컸음
- 그런데 이곳의 명칭이 문화재청에서 현재의 지역 명칭을 부여하여 ‘홍성 의사총’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홍성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홍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이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의견서를 내게 되었음
- 우리 홍성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한다면 현재 변경된 ‘홍성 홍주의사총’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명칭의 재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홍주향토문화연구회장>

- 홍성의 역사와 문화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홍주문화향토연구회회장인 본인은 이번 ‘홍주의사총’의 명칭 변경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생각함
- 우리 홍성은 충과 절의의 고장이며, 고려의 최영, 조선의 성삼문, 홍가신, 근대의 김좌진, 한용운 등은 우리 고장이 배출한 인물로 충과 절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임
- 이런 인물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1895년과 1906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홍주의병은 충과 절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행동임. 홍주의병은 현재의 홍성이 아닌 과거 홍주에서 관할하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음. 이런 뜻에서 ‘구백의총’이라 불리던 지명도 ‘홍주의사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홍주의역사와 문화를 보조하고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런데 이번 문화재청의 ‘홍성 의사총’의 명칭 변경은 홍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홍주’가 과거의 지명일 지라도 충남 서해안 지역의 중심이었고, 의병전쟁은 홍주 관할 지역에서 참여하였다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한다면 ‘홍성 의사총’이 아닌 ‘홍성 홍주의사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음
- 이렇게 될 때 홍주의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들의 정신과 뜻도 함께 유지될 수 있다고 봄.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본인은 ‘홍성 의사총’이 아닌 ‘홍성 홍주의사총’으로 명칭 변경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4.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2차))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기 변경허가 받은 사항('12.2.29)에 대하여 변경허가(2차) 신청함
- ※ 수원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제기한 공원위치 변경 및 영역 확장, 건물 배치 조정 등을 반영한 신청사항은 지난 사적분과 회의('12.2.8)에서 조건부 가결됨
 - 당초 허가대로 해발 최고높이(109.1m)를 준수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최○○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 (3) 신청내용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2차))>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10-15일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91m 이격/10구역)
 - 사업내용

구분	기 허가사항 ('08.4.7.)	변경허가 사항 ('12.2.29)	변경허가 금차 신청사항	비고
신청인	최○○	최○○	최○○	
규모	22동, 지상10~15층	22동, 지상10~15층	23동, 지상15~18층	증) 1동, 3층
대지면적	76,218㎡	75,979㎡	75,979㎡	
건축면적	22,305㎡	16,196㎡	12,850㎡	감) 3,346㎡
연면적	233,765.65㎡	247,155.69㎡	239,340.59㎡	감) 7,815.1㎡
건물 최고높이	49.1m	43.65m	52.2m	증) 8.55m
해발 최고높이	109.1m	108.95m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113.95m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외)	115.65m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122.5m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외)	증) 6.7m 증) 8.55m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2008.04.07 : 수원 화성 공동주택 신축 사업 현상변경허가
 - 22동, 지하2층, 지상10~15층, 최고높이 49.1m
- 2009.03.0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소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공원 위치 변경, 주동의 입면, 필로티 계획 보완 등
- 2010.11.~2011.6 :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4차) 불허
 - 용적률 증가를 위해 최고높이를 변경한 변경허가 신청 부결
- 2011.05.30 :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당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필로티, 입면 등 보완
- 2011.09.27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115의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최○○)
- 2012.01.13 :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5차)
- 2012.02.08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 - 조건부 가결
 - 당초 허가대로 해발 최고높이(109.1m)를 준수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 2012.02.29 : 현상변경 허가사항 조건부 통보
 - 수원 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내 건축물은 기존 해발고 109.1m를 유지할 것
- 2012.08.09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원고(115의 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최○○) 패소
- 2012.11.05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6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5.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1)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73m 이격된 곳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 시(9.12) 현지조사 후 재검토, 제10차 회의 시(10.10)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사유로 부결된 바 있음
- 건축규모, 입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박○○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등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54-7(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3m 이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446.00m ²	446.00m ²	-
건축면적	198.16m ²	221.15m ²	증 22.99m ²
연면적	784.28m ²	776.34m ²	감 7.94m ²
건축규모	A동 : 지하1층·지상2층 B동 : 지하2층·지상2층	A동 : 지하1층·지상2층 B동 : 지하2층·지상1층	감 지상1층(B동) -높이 약 1m 감-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9.21/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종로구 부암동 소재 한양도성에서 동측으로 73m 이격된 표고가 13m 정도 차이가 나는 구릉지에 A동(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88.95㎡, 높이 11m)과 B동(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395.33㎡, 높이 14.5m) 등 2개의 동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로서 현장의 지형을 고려할 때 B동의 높이가 높아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6.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2)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70m 이격되어 있으나 한양도성의 연결된 유적지로 시굴조사 결과 성곽 유구가 확인되어 현상변경 허가신청함
- 사업대상지는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적보존방안에 대해 매장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2012.8.24) 보존조치 및 사적지정을 권고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유구가 발굴된 지역은 현재대로 유지하여 유구를 보존하고 그 외 부지에 건축(지하 2층, 지상 5층)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시(9.12) ‘서울시의 한양도성 보존관리계획 마련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 제11차 회의시(11.14)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된 바 있음
- ※ 서울 한양도성 전체 구간 18.627km(잔존구간 13.156km, 멸실구간 5.471km) 중 문화재 미지정 구간은 5.6km(전체구간의 약 30%)
- ※ 문화재구역으로 미지정된 지역(한양도성 추정 유적지)에서 건설공사 시에는 유적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등
-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96-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70m 이격 /한양도성 연결된 유적)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13.70m²
 - 건축면적 : 340.09m²
 - 연 면 적 : 1,876.72m²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5층(최고높이 약 18.9m)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등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유적보존 및 활용방안
 - 성곽 연결선으로 확인된 토지상에는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지 않아 성곽 연결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주 도로로부터 약 9m까지)
 - 잔존석은 흙으로 덮어서 원형 그대로 보존
 - 표지석 및 설명판, 입체모형도 등을 설치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5/문화재위원 ○○○, ○○○)

<○○○ 문화재위원>

- 장충동 96-1번지는 발굴결과 유구는 많이 훼손되었으나, 성벽일부의 유구가 확인되고, 성벽지반이 확인되어 성벽의 선상임을 알 수 있는 곳임.
- 인접한 장충동 98-1번지도 같은 여건으로 조사한 결과 세종 때 축조된 형식의 성벽이 원형대로 확인되었음.
- 신청된 지역(장충동 96-1번지)은 추정성벽에 일부 걸치거나 접한 곳이어서 대지여건상 성벽에서 일정거리를 띄워 건물축조가 어려운 여건임.
- 현재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잠정목록)으로 등재하는 계획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양도성 중 아직까지 일부 미 지정되거나 사유지로 남아있는 일부구간에 대한 보존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여건상 당장 사적지정은 비록 어렵다하더라도, 금회 신청된 건물의 신축은 어렵다고 보며, 필요한 조치로 현상대로 보존함이 필요하다고 봄.

<○○○ 문화재위원>

- 신청지는 남측으로 동호로 17길 북단의 한양도성 성벽과 북측으로 한양도성의 광희문, 흥인지문과 연결되는 한양도성의 성벽연결 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 신청지의 북측 약 80m(장충동 89-1번지) 구역에서 성벽유적이 확인된바 있으며, 그 북측으로 한양도성의 성벽유적이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신청지에 대한 조사결과 성벽 기초부로 추정되는 할석과 판축부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한양도성 성벽의 내탁부 등을 고려하여 성벽의 기저부 (약 10m) 및 기저부 좌우 양측으로 20m 구역은 현상을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로 미 지정된 한양도성은 현재 서울시에서 과업 수행중(마스터플랜 용역)인 한양도성의 보존관리활용계획수립 후 서울시에서 국가지정 신청할 경우 사적지정을 검토하고, 현재는 한양도성의 유적을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문화재지정을 권고(문화재보호법 제70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관련 서울시 의견('12.10.10)

- 중구 장충동1가 96-1번지 등과 같이 서울 한양도성 전체 구간 중 일부 구간이 사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미지정된 경우라도 당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등 보존관리계획이 제도적으로 마련·시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는 2011년 서울 창덕여중 증, 개축부지 내 발굴 유적보존 때와 같이 그 동안 발굴된 서울 한양도성의 성곽유구 보존관리계획을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고, 그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또한, 중구 신당동, 장충동 일대는 그동안 수차례 성곽 유존이 지적되어 왔던 곳으로 2009년 학술용역(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장기적으로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국비 지원에 의한 토지매입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지난 5월 우리시에서 실시한 서울 한양도성 관련 기자설명회에서도 성곽이 훼손된 채 유존하는 사유지(장충동 등)은 귀 청과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연차적 매입 등 지속적인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장충동 96-1번지는 노출된 유구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귀 청의 조치가 있었으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비를 투입하여 해당 부지의 매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임

- 또한 한양도성 국가문화재 미지정 연장구간 등 국유지의 경우 재산관리를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원화하여 문화재 보호 등 조치가 필요하며
 - 사유지 구간 토지 매입자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청장의 사전 검토대상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대한 개정도 건의한 바 있음
-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서울 한양도성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서울 한양도성의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용역을 추진(2012.8~2013.8) 중에 있음

(3) 장충동1가 96-1 유적 보존조치 내용(2012.8.28/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통보)

- 발굴완료 조치 관련
 -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철저 및 원상복구 철저
 -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 준수
- 유구보존 관련
 - 유구보존내용(매장문화재분과 제8차, 2012.8.24)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대로 조치
 - .. 유구는 남아있는 부분이 적으나 지형은 원형대로 잘 남아 있음
 - .. 한양도성 성벽 통과선이 확인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발굴은 필요치 않음
 - .. 보존필요
 - .. 도성 동남측 성벽선이 분명히 확인되어 보존대책을 마련함이 좋겠음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 결과 : 91.38점(2012.7.31.)
 - .. 조사결과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체성 지대석 받침이 확인되어, 한양도성 멸실구간의 통과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 .. 국가사적으로 확대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서울성곽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대책 수립이 필요함

(4) 한양도성 연결된 유적 발굴 후 보존조치 현황

- 서울 중구 장충동1가 89-1번지(2010.7.29)
 - 확인된 성곽에 대해서는 보존조치토록 하고 추정선 지역에 대한 형질 변경 시에는 현상변경 신청 등 관계부서(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서울시 문화재과)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함
- 서울 창덕여중 증·개축 부지 내 유적(2011.3.2)
 - 서울성곽의 복원을 위해 성곽 외곽선으로부터 안팎으로 이격거리는 최소한 20m확보, 발굴된 성곽 유구는 복원때까지 복토 후 원상태로 보존

(5) 발굴유구 보존에 대한 서울시 의견(2012.8.21)

가. 발굴유구 보존 및 토지매입

- 장충동 일대는 성곽 유존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지역이며 서울시에서도 2009년 학술용역을 통해 장기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에 의한 토지매입계획 수립(2009년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 장충동 96-1번지는 노출된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해 우선하여 국비투입 매입 요구(매입 후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재발방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한양도성 유존구간 표시)

-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사항이라는 점이 건축 행위 허가에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 토지매수자의 개발계획 수립에 제동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청장 사전 검토대상지역임을 표시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참고토록 제도화
- 서울시에서 2012.6.27. 국토해양부 및 문화재청에 위 사항을 요구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규제 신설로 인지하고 있어, 중앙부서인 문화재청의 검토의견과 토지이용규제심의회의 이행 필요 회신(12.7.13.)

다.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검토

-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한양도성 기저부로부터 내부 10m까지는 문화재 구역으로 설정
- 문화재구역선에서 내외 2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 예정
- 문화재구역 예정 국유지에 대한 문화재청으로 관리권 이전을 요청하여 자산매각에 따른 시민피해를 미연에 방지(341필지 349,734㎡)

(6) 한양도성 문화재 지정현황 등

○ 지정현황

- 지정 별 : 사적 제10호 (1963. 1.21. 지정)
- 지정면적 : 2,045필지 563,882㎡
 - 지정구역 218필지 25,246㎡, 보호구역 2,045필지 538,636㎡
- 전체 구간 : 18.627km(잔존구간 13.156km, 멸실구간 5.471km)
- 미지정 구간 : 5.6km(전체구간의 약 30%)

○ 문화재구역 지정 현황

- 성벽을 기준으로 성 내외측으로 20~30m 영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송례문, 흥인지문, 오간수문, 봉수대는 별도 지정)

- 현존 성벽은 대부분 지정되어 있으나, 대한상공회의소, 창덕여자중학교, 사직동 주택가, 경신고등학교, 혜화동 두산빌라 주변, 장충동 주택가 등의 잔존 성벽은 미지정
- 성벽 미존재 구간 미지정(최근 발굴조사로 노출된 잔존 성벽도 미지정)
- 문화재구역 미지정구간 현황
 - 성벽잔존구간, 발굴조사 후 유구노출구간, 발굴조사영역 내 유구멸실구간
 - 면적 340필지 78,670m²(사유지 266필지 44,213)/토지매입비 2,335억
 - 공공 교육시설 성벽추정구간, 성벽잔존구간
 - 면적 541필지 125,834m²(사유지 248필지 48,869m²)/토지매입비 1,636억
 - 주거사업시설 성벽추정구간
 - 면적 346필지 75,748m²(사유지 193필지 33,814m²)/토지매입비 2,137억
- 문화재구역 미지정구간 보존관리 현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건설공사시 시발굴 조사(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로 건설공사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문화재보호법 제15조제2항제3호)

마. 의결사항

- 부결
 - 사적 지정 추진 필요
 - 한양도성의 미지정 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계획 수립시 동 지역과 연계한 보존관리 방안 마련 필요

7. 서울 한양도성 내외 남산케이블카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외에서 남산케이블카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외에서 기존 남산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화장실, 경사로)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등
- (3) 신청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6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 30.99㎡, 지상 2층
 - 장애인 경사로 : 58.6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8.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12.10.10.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됨에 따라 '12.12.04. 현지조사 실시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면
- (3) 신청내용 <일반산업단지 조성>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96,602㎡
 - 용도 : 산업시설
 - 주요내용
 - 전체 부지조성계획 조정(당초: 3단 ⇒ 변경: 4단)
 - 산정부 절토고 조정(당초: 60m ⇒ 변경: 38m)
 - 동측 대절토사면 완화 및 계단림 수림대 조성(절개지 경관 개선)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12.04/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관문성 주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3차에 걸친 위원회 심의에서 과도한 성·절토에 의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이유로 부결된 건임.

- 이후 2012년 10월, 사적분과 10차 회의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의결된 건으로서 현지조사를 통해 산업단지의 대지가 조성되는 동측의 절개지 사면은 현재 300~400m 길이의 일자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위적인 일직선으로 하기보다는 능선 지형에 따라 사면을 구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반 높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성·절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성·절토에 관한 현황의 계획에 대하여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2.02.22/문화재위원 ○○○, ○○○, ○○○, ○○○, ○○○, ○○○, ○○○)

- 관문성 인접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자연림으로 우거진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임
- 동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성·절토로 인한 지형변화로 관문성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크게 훼손 될 것으로 보임

(3) 현지조사의견('11.11.04/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관문성 인접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은 임도와 소하천이 경계하고 있고 사업대상지는 과수원과 소나무, 잡목 등으로 자연림이 우거진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관문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최소한 성 밖 200m까지의 지형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시 과도한 성·절토로 인하여 관문성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사료됨

(4) 추진경과

- '08.01.17 : 이화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 '08.06.04 : 울산시 문화재 영향검토(시 문화재위원 3인)
- '08.10.30 :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 '10.08.09 : 토지 보상 완료 및 소유권 이전
- '10.07.27 : 시·발굴조사 착수
- '10.12.31 : 관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11.11.09 :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12.02.08 :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12.02.22 : 현지조사(문화재위원 7인)

- '12.03.14 :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이유로 부결)
- '12.10.10. :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2.12.04. : 문화재위원 등 현지조사(문화재위원 ○○○ 등 4명)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9. 영주 소수서원 주변 박물관 증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주변에서 박물관을 증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소수서원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100m 이격된 2구역 내에서 박물관을 증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 ※ 2012.11.14 (사적분과 11차 위원회) 심의 부결
 - 사업내용 : 박물관 증축 1동, 조경 및 배수공사 등
 - 부결사유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영주 소수서원 (사적 제55호)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 외 일원
- (3) 신청내용 <소수박물관 증축>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46(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구분	당초신청 (12.11월 부결)	금회신청(안)		비고
		개선(1안)	개선(2안)	
건축면적 (연면적)	769.41㎡(1,491.12㎡)	769.41㎡(1,491.12㎡)	769.41㎡(1,491.12㎡)	변경 없음
규모	지상 2층	지상 2층	지상 2층	변경 없음
최고높이	11.2m : RC조 10.1m : 한식목구조	7.9m : RC조(감:3.3m) 9.2m: 한식목구조(감:0.9m)	7.9m : RC조(감:3.3m)	1안 : RC조, 목구조 높이 축소 2안: 한식목구조→ 평슬라브 변경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2안: 한식목구조 삭제
내용	-1층 : 기획전시실, 휴게실 -2층 : 세미나실, 강학당, 수장고 -R층 : 옥상휴게공간 -기타 : EVEL. 설치	-1층 : 기획전시실, 휴게실 -2층 : 세미나실, 강학당, 수장고	-1층 : 기획전시실, 휴게실 -2층 : 세미나실, 강학당, 수장고	1.EVEL.삭제 2.외부통로(2층진입)추가 3.옥상휴게공간 삭제
부대공사	[조경공사] - 화계조성 : 약180㎡ - 조경수 식재 : 소나무 5주(H5□W2.5), 소나무 2주(H1.5□W2.0), 취뽕나무 30주(H1.0□W0.3), 황매화 20주(H0.8□W0.4), 공작단풍 3주(H1.5□R6) [배수공사] 흡판 시설(D=600, 약83M, D=450, 약39M)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1안)

10. 고양 행주산성 등 주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및 파주시 소재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식묘군」 주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양 행주산성, 고양 서삼릉,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식묘군 주변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11차 회의(‘12.11.14)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어, 설계 보완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및 소재지

- 고양 행주산성(사적 제56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
- 고양 서삼릉(사적 제200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월당동)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식묘군(사적 제148호)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

(3) 신청내용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방화대교북단)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자유로)
(문화재보호구역 및 1구역 등)
- 사업내용
 - 연장 : 35.6km, 2~6차로, 폭원 16.2~30.6m
 - 토공 : 순성토 177만^m (흙깎기 637만^m, 흙쌓기 920만^m)
 - 교량공 : 83개소 / 8,244m
 - 터널공 : 3개소 / 1,129m
 - 출입시설 : JCT 2개소, IC 8개소
 - 영업소 : 본선 2개소, IC 6개소, JCT 2개소
 - 휴게소 : 1개소

- 신청내용 변경사항

구분	1차 신청내용	2차 신청내용	비고
서삼릉 문화재구역과 JCT 이격거리	127m	153m	증) 26m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문화재구역과 고속도로 이격거리	188m	206m	증) 18m
서삼릉구간 차폐	-	차폐식재 L=260m	추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12.10.22/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신설구간 중에 행주산성 권역, 서삼릉 권역, 덕은리 지석묘군 권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로서, 행주산성 권역에서는 동측으로 지나가는 권율대로에 같은 높이로 345m 이격된 동측으로 진행되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며, 서삼릉 권역에서는 서삼릉의 일부를 동서로 통과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인터체인지 진입램프가 연결되면서 지정구역 내의 도로를 확장하여 신설되고, 단면상에서 인터체인지가 상당히 높게 구성되어 인터체인지의 위치, 높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덕은리 지석묘군 권역은 덕은리 지석묘군에서 인지되지 않고 지표조사를 통해 유물이 산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계획된 도로는 덕은리 지석묘군과 일체를 이루는 구릉의 절토량이 많아 지형을 과도하게 변형하는 등 이번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신설에 있어서는 도로의 높이, 위치, 절토량과 함께 노선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1. 남한산성 내외 케이블선 지중화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 케이블선 지중화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한산성 성곽 내 경비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선로를 지중화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3) 신청내용 <케이블선 지중화공사>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및 1구역)
- 사업내용
 - 철거구간 : 659m
 - 신설구간(지중화) : 700m
 - 서문~수어장대 구간(약 515m), 남문 구간(약 185m)
 - 터파기 및 되메우기 : 491.4m³

구분		서문~수어장대 구간	남문 구간	합계
철거공사	광케이블 철거	492m	167m	659m
	전원케이블 철거	492m	167m	659m
	통신용(IP 강관주) 전주 철거	6개소	6개소	12개소
신설공사 (지중화)	터파기 및 되메우기	361.53m ³	129.87m ³	491.4m ³
	전원 케이블 및 광케이블 매설	515m	185m	700m
	핸드홀 설치	10개소	4개소	14개소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 구역은 발굴조사, 그 외 사업구간은 시굴조사 후 사업시행

12. 부여 나성 내외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외에서 부여나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농로 이설, 전신주 이설 등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은 부여 나성 복원정비사업(2012년 광특사업)의 일환으로 농로 이설, 전신주 이설, 잡목제거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36-1 등
- (3) 신청내용 <부여 나성 내외 정비사업>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430-4 일원, 능산리 산15-1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성곽 전면 기존 농로·용수로 선형변경 및 재설치 L=250.0m
 - 농로주변 전주 이설 13개
 - 잡목제거 13,800m²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농로·용수로 선형변경은 최대한 성곽에서 이격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사유지 매입 필요

13.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로 포장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로 포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로 포장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 4 외
- (3) 신청내용 <농로 포장>
 -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67-2(문화재구역과 연결)
 -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
 - 규모 : L=200m, B=3m, T=0.15m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황토폐장으로 대체

14. 금산 칠백의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금산 칠백의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변○○
- (2) 대상문화재명 : 금산 칠백의총(사적 제105호)
 -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40번지 외
-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산 49-2 외 1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 /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규모 : 면적 198㎡, 높이 7.8m(1층)
 - 건축면적 : 198.00㎡
 - 연면적 : 198.00㎡
 - 규모 : 지상 1층(최고높이 7.80m)
 - 구조 : 경량철골조
 - 용도 : 일반음식점
 - 기타 : 주차대수 1대, 정화조 15ton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5. 진도 용장성 주변 양식장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주변 양식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도 용장성 주변 양식장 조성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적분과 제5차(2012.5.9), 제8차(2012.8.8) 심의 시 부결되어 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임○○
- (2) 대상문화재명 : 진도 용장성(사적 제126호)
 - 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 외
- (3) 신청내용 <양식장 조성>
 -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벽파리 676-5(문화재구역으로부터 55m 이격)
 - 사업내용

구분	제5차 심의(부결)	제8차 심의(부결)	금회신청
양식수조	괘돌쌓기 H=0.5~0.8m, L=185m	괘돌쌓기 H=0.5~0.7m, L=160m	괘돌쌓기 H=0.5~0.7m, L=160m
콘크리트 포장	T=0.2m, L=1,045m	T=0.2m, L=981m	T=0.2m, L=981m
보호각	높이 3.5m, 파이프구조	없음	없음
차폐수	없음	없음	H=2.5m 이상, 105분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6. 강화산성 등 주변 가로조성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등 주변 가로조성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주변 가로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10년 사적분과 제7차 회의('10.7.14) 시 조건부(조형물의 규모·형태 등 관계 전문가 자문) 가결된 건으로, 사업부지 일부분에 장애인 및 노약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허가사항 변경신청한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10차 회의('12.10.10)에서 “당초 허가사항대로 사업시행” 사유로 부결되어, 자료 보완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강화 고려궁지(사적 제133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등

(3) 신청내용 <가로조성 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국도48호선~강화 고려궁지~강화산성 북문)

기 허가사항 (‘10.7.14)	1차 변경신청내용 (‘12.10.10/부결)	2차 변경신청내용
○ 보도확보, 차도개선, 노후식재 및 가로시설물 개선 - 연장(L) = 1.4km(국도48호선~강화산성 북문) - 폭원(B) = 10.0~12.0m(왕복 2차로 구간), 6.0m(송악산 산책길)	○ 고려궁지 앞 주차장 : 버스 회차구간 조성(98㎡), 승용차 주차장 조성(5대/67.2㎡) ○ 진송루 앞 광장 : 승용차 주차장 조성(5대/67.2㎡)	○ 고려궁지 앞 주차장 : 장애인 및 노약자 주차장 조성(5대/180㎡) - 주차구역 면적 90.75㎡ - 진입구역 면적 89.25㎡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강화군수)

- 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고려궁지 기존 주차장을 공원 및 쉼터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주차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일부 구간을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허가 사항변경을 신청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17. 강화 부근리 지식묘 내 오수처리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내 오수처리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된 하수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10차 회의('12.10.10)에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어, 자료 보완 후 재신청한 사항임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심의결과('12.7.4) : 보류
 - 문화재의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치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재검토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사적분과위원회 심의결과('12.10.10)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식묘(사적 제137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 (3) 신청내용 <오수처리시설 증축>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38번지
 - 사업내용

구분	기존 시설	1차 신청 ('12.7.4/보류)	2차 신청 ('12.10.10/부결)	3차(금번) 신청내용	비고
지하층	125.28㎡	-	-	-	
지상1층	-	54.75㎡	54.75㎡	3.5㎡	
최고높이	-	2.0m	1.3m	0.6m	
구조	RC조	RC조	RC조	RC조+FRP	
외부마감	-	방부목	방부목	FRP	

※ 증축시 건축면적 3.5㎡, 연면적 128.78㎡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강화군수)

- 위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오수처리시설이 문화재보다 비교적 낮은 지역에 설치되며 주변에 움막시설물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 지역임
- 내년부터 시행하는 환경관련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정화시설로는 추가되는 항목(인 등)을 처리할 수가 없어 부득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예산 및 시간문제로 보호구역 밖으로 이전설치는 당장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주변 시설물이 완성되면 이전할 것이며 새로운 시설사업을 발주, 완공 후 기존 시설물은 폐기할 예정임
- 금번 설치되는 시설물은 차폐식재 및 목재 등을 활용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 조치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현재 이 일대는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으로 조성사업 3단계(2022년~2025년)에 고인돌유적지구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정비시 오수처리시설도 보호구역 밖으로 이전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적과 어울리게 외관을 짚 등의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차폐처리

18.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2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2동)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제140호)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번지 외
- (3) 신청내용 <단독주택(2동) 신축>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1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2,850㎡, 건축면적/연면적 385.6㎡(192.8㎡×2동), 2동, 1층, 최고 높이 4.9m, 경량철골조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9.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식묘군 주변 단독주택(4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식묘군」 주변 단독주택(4동)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식묘군 주변 단독주택(4동)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회의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4차례 ('11.6.8/'11.9.7/'11.11.9/'11.12.14) 부결되어, 설계변경 후 재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식묘군(사적 제148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번지
- (3) 신청내용 <단독주택(4동) 신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506, 501-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8m 이격/1,2구역)
 - 사업내용

구분	1차신청 ('11.6.8)	2차신청 ('11.9.7)	3차신청 ('11.11.9)	4차신청 ('11.12.14)	금차신청
신청면적	2,500㎡	2,577㎡	1,002㎡	2,577㎡	2,577㎡
건축면적	591.2㎡	592.2㎡	529.2㎡	462.6㎡	528㎡
연면적	1,555㎡	1,058.4㎡	529.2㎡	462.6㎡	528㎡
층수	3층	2층	1층	1층	1층
건물높이	13.5m (옥탑포함)	8.7m (경사지붕)	4.7m (경사지붕)	4.7m (경사지붕)	4.7m (경사지붕)
규모	4개동, 옹벽4m	4개동, 옹벽4m	4개동, 옹벽4m	3개동 옹벽4m	4개동 옹벽4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0. 함양 사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사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
- (2) 대상문화재명 : 함양 사근산성(사적 제152호)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 60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914번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문화재구역으로부터 495m 이격)
 - 건축면적 : 180.93㎡
 - 규모 : 지상 2층, 최고높이 9.4m
 - 용도 : 단독주택 및 창고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1.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리 동구릉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430-500m 이격된 곳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복합유통센터 건물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동 신청건은 본 위원회 제10차 심의('12.10.10)에서 부결되어 신청자가 계획을 수정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 (3) 신청내용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복합유통센터 건물신축)>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90(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0~500m이격/5구역(건축물 최고 높이 29m이하, 9층 이하))
 - 사업내용
 - 사업부지 : 181,135㎡
 - 용도지역 : 유통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시장시설로 변경
 - 건축/연면적 : 18,185㎡/229,540㎡
 - 총규모 18층, 최고높이 68m, 1개동, 도매시장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구분	1차('12.07.04)	2차('12.08.08) 3차('12.09.12) 4차('12.10.10)	5차(금회)	비 고
사업부지	23,134㎡	좌동	좌동	※ 전체사업 중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은 6층 26m, 1개동
건축면적	93,345㎡	좌동	좌동	
연건축면적	223,600㎡	212,700㎡	229,540㎡	
규모/높이	지상25층/ 100m	지상23층/ 92m	지상18층/ 68m	
동수	1개동	1개동	1개동	
주용도	도매시장(판매시설)	좌동	좌동	

라. 참고사항

(1) 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추진 현황

- '12.07.04 : 1차 심의-부결(1차 신청/동구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 '12.08.08 : 2차 심의-보류(2차 신청/시뮬레이션 보완 후 재검토)
- '12.09.12 : 3차 심의-현지조사 후 재검토
- '12.09.26 : 현지조사 실시(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12.10.10 : 4차 심의-부결(동구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2.12. : 3차 현상변경허가 신청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22. 김포 장릉 주변 골프연습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에 골프연습장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포 장릉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0m 이격된 곳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동 신청 건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12.11.14)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된 건으로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산141-1)
- (3) 신청내용 <골프연습장 신축>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28번지 외 8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0m이격/3구역)
 - 사업내용

구분	1차('12.8.8)	2차('12.10.10)	3차('12.11.14)	금회
부지면적	25,952㎡	좌동	좌동	좌동
건축/연면적	8,701.94㎡/5,741.97㎡	좌동	좌동	좌동
건축규모	2동 골프연습장 4층, 관리실 1층	좌동	좌동	좌동
건축구조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좌동	좌동	좌동
최고높이	철탑 52m	철탑 49m	철탑 47m (-2m)	좌동
그물망 외형	사각	사각	원형	좌동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07.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입지현황

- 본 신청지역은 김포 장릉으로부터 160m 이격된 곳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신청한건으로 신청지 앞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인접부지에 15층 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가운데, 부지와 장릉쪽 능선사이에는 고려공원이라는 4,500기의 묘지공원이 인접되어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서 부각되고 있음.

2)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 금번 신청한 골프연습장 철탑(47m)과 장릉의 배산역할을 하는 능선부 정상(150m)과는 103m 의 고저차가 있고, 외백호를 감싸고 있는 능선부의 제일 낮은 부분(55m)과는 8m정도의 고저차를 보이고 있어 시각적으로 경관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철탑의 재료나 외관디자인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철탑의 높이도 현 신청높이 보다 좀더 낮출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됨. 아울러 신청지 주변에 인접한 아파트단지 및 공원묘지 등이 있는 것임을 고려해볼 때, 소음 및 경관과 운영상에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3)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 해당지형의 동측은 장릉의 우백호 능선에 해당하는 공원묘지이며, 북측은 아파트 단지, 남서측은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지형으로 능침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곳으로 시각적 경관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철탑구조물의 높이가 기준보다 2.6배나 되고, 야간 조명, 소음 등 세계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음. 따라서 규모의 축소와 색채, 디자인상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4)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김포 장릉의 혼유석에서는 인지되지 않으나, 외부에서 볼 때, 김포 장릉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우측 능선에 상당히 규모가 크고 높이가 높은 골프연습장이 신축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2) 추진경과

- 2008.03.07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허가(○○○)
 - 9동, 지하1층, 지상 8~18층, 건축면적 3,970.61㎡, 높이 58.2m

- 2009.03.07 허가기간 이후 1년 이내 미착공에 따른 허가 취소
- 2009.06.30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 2010.07.0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사업대상부지 3구역(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 해당됨
- 2012.07.04 김포 장릉 주변 골프연습장 신축 현상변경 허가신청(○○○)
- 2012.08.08 문화재위원회 부결(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012.10.10 문화재위원회 부결(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012.11.14 문화재위원회 보류(현지조사후 재검토)
- 2012.12.07 현지조사 실시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3. 파주 삼릉 주변 건물(공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에서 건물(공장)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삼릉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격된 곳에 건물(공장)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리 산15-1번지
- (3) 신청내용 <건물신축>
 - 위치 : 경기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24-74(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9,394m²
 - 건축/연면적 : 2,014.5m²/2,014.5m²
 - 규모 : 건물 2동 1층(A동 1,000m²/ B동 1,014.5m²), 최고높이 8m
 - 절토/절토 : 10,695m³/10,618m³
 - 보강옹벽 : 높이1.0~3.0m(면적 : 2,182m²), 법면:760m²
 - 용도 : 공장
 - 구조 : 조립식 내화 판넬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12.03./문화재전문위원 ○ ○ ○)
 - 신청지역과 인접 곳은 공장 밀집지역임(보존구역 밖 / 5구역)
 - 인접한 124-73(임), 124-74(임) 구역은 녹지 지역이었으나 현재 파주시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 중임

- 해당 지역은 산림이 다소 양호한 지역으로 인접하여 파주시에서 녹지 보존을 위해 수종갱신 중에 있음
- 허가 신청서대로 시행 시 상당한 양의 절개지 및 절토량에 의한 경관훼손이 우려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4.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서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4구역·7구역)에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효행로481번길21)
- (3) 신청내용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15-222외 27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90m 이격/4구역과 7구역)
 - 4구역 : 건물최고 높이 평지붕 11m(경사지붕 14m), 3층
 - 7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총 부지면적 70,693㎡)

구분		4구역	7구역	비고
공동주택	부지면적	24,481㎡	12,694㎡	구역 외 33,518㎡
	규모	11층~15층	13층~15층	최고층 15층
	높이	90~95m	90~95m	
	이격거리	317~470m	441~500m	
도시기반시설	도로	3,716㎡	2,527㎡	폭원 : 11~23.5m
	완충녹지	1,595㎡	0	
	공원	3,643㎡	1,304㎡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12.11.21/문화재위원 ○○○)

- 화성 용릉과 건릉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나 구릉성 지형의 훼손이 심함
 - 표고(45m~20m)차가 있는 지형의 절·성토를 통한 지반 평탄화 작업 후 11~15층 APT건립
-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하는 건물 배치 및 입지계획 필요
- 화성 용릉과 건릉 높이, 인근 신미주 아파트 높이, 동 사업 부지의 건물 높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보강 필요
 - 추후 용건릉 인근의 건물 배치 및 차단녹지 설치, 방음벽 설치에 대한 계획 조정 필요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5. 경주 재매정 등 주변 마을진입로 포장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등 주변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재매정, 경주 천관사지 등 문화재 경계에서 약 100m 이격된 1·3구역 내에서 마을진입로 포장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재매정(사적 제246호),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7 외 일원
- (3) 신청내용 <천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94-3 외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이격/1,3구역)
 - 사업내용 : L=310m, B=8.0m
 - 토 공 : 절토 322m³, 성토 777m³
 - 포장공 : 아스팔트 29.5A, / 콘크리트 1,231A
 - 배수공 : 흡관(D1,000) L=20m, L형 측구 L=315m
PE이중벽관(D300) L=267m, 우수받이 53개소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12.05/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 ○ ○)
 - 본 건은 경주 재매정에서 남측으로 100m 정도 이격된 천원마을 입구의 1,3구역에 포함된 기존 3~4m 폭의 도로를 폭 8m, 길이 310m로 확포장 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확장되는 도로 밖은 토사 범면으로 구성하므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확장 구간 중 연결한 곳에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된 후 보존조치가 이루어진 곳이 있어 확·포장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후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26. 경주 천관사지 주변 단독주택 건축(1)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천관사지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80m 이격된 1구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44 일원
-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38-3(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8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535m²
 - 건축면적 : 105.66m² / 연면적 : 154.98m²
 - 건축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1동 (최고높이 8.15m)
 - 건축구조 : 한식목조, 한식기와 잇기
 - 담장공사 : 외편담장 L=43.8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12.0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경주 천관사지에서 북동측으로 약 80m 이격된 1구역 (경주시 교동 138-3))에 높이 8.15m, 건축면적 105.66m²의 2층 전통 목조 주택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천관사지에서 인지되지 않고 기존 마을 내에서의 건축 행위이며 전통건축양식으로의 건축은 장려할 만한 사항으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27. 경주 천관사지 주변 단독주택 건축(2)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천관사지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80m 이격된 1구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44 일원
-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38-4(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70m²
 - 건축면적 : 90.87m² / 연면적 : 154.58m²
 - 건축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1동 (최고높이 9.2m)
 - 건축구조 : 한식목조, 한식기와 잇기
 - 담장공사 : 외편담장 L=24.3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12.0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주 천관사지에서 북동측으로 약 90m 이격된 1구역(경주시 교동 138-4)에 높이 9.2m, 건축면적 90.87m²의 2층 전통 목조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천관사지에서 인지되지 않고 기존 마을 내에서의 건축 행위이며 전통건축양식으로의 건축은 장려할 만한 사항으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28.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공유수면매립 등(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공유수면매립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변경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에 공유수면매립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변경신청한 사항으로 2012.11.14.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됨에 따라 '12.11.28. 현지조사 실시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동삼동 패총(사적 제266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 (3) 신청내용 <공유수면매립 등(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880-3번지 지선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0m~380m 이격)
 - 사업내용
 - 매립면적 : 46,000m²
 - 시설물 설치계획

구역	당초 (‘06.11.22)	1차 변경신청 (‘12.9.12/부결)	2차 변경신청 (‘12.11.14)	비고 (허용기준)
100m 내	최고8층이하	최고 5층(17m)	최고 3층(11m)	최고 11m이하
100~200m 내		최고 12층(38m)	최고 8층(26m)	최고 26m이하
200~400m 내		최고 19층(60m)	최고 17층(54m)	최고 26m이하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1.28/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부산 동삼동 패총의 남동측 공유수면 매립지에 적용되고 있는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일부 초과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재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과 매립 예정지 주변은 횃집과 모텔 그리고 이에 따른 불법주차 등이 난잡하게 들어서 있는 현황임
- 현재 매립 예정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100m 범위 내에는 3층 이하(평지붕 11m, 경사지붕 14m)로 100m 범위 밖은 8층 이하(26m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 현재 신청된 건축 계획은 100m 범위에서는 공원, 동삼동 패총을 위한 주차장 시설과 3층 규모의 건물을, 100~200m의 범위에서는 8층 규모(26m이하)로, 200m범위 밖에서는 12~17층(38~54m이하) 규모로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 본 계획에 의하면 해수 집수정 지하화, 해양파출소 사무소 이전, 동삼동 패총 해안 주변의 선박 정박과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한 불량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와 동삼동 패총의 주차시설 확보, 공원에 의한 완충구역 설정 등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며, 문화재 구역에서 바라볼 때, 공원의 수목과 8층 규모의 건축물에 의해 뒷부분의 건축물이 잘 인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때, 200m 범위 밖의 건축물 높이 일부만 조정된다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문화재 경관을 개선하는 계획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추진경과

- 2004.07.22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시설물 높이 10층 이하)
- 2004.08.24 : 심의결과 부결(문화재 주변경관 저해우려 등의 사유)
- 2004.09.22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재심의 신청(시설물 높이 8층 이하)
- 2006.11.22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허가
 - ※ 각종 시설물 설치는 공유수면 매립 완료 후 별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2010.01.27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0.05.04 : 실시계획 승인(○○○)
- 2010.12.31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2012.05.21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 2012.08.28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변경 신청(시설물 최고높이 19층 이하)
- 2012.09.12 : 심의결과 부결(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012.11.14 : 심의결과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 2012.11.28 : 현상변경 현지조사(○○○, ○○○)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해안쪽에서 내륙쪽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만하게 조정
- 건축물의 외관은 경사지붕 등 사적지와 어울리게 조정
-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시행

29. 남원 실상사 내 연못 매립 및 수목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내 연못 매립 및 수목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원 실상사 내 연못 매립 및 수목 정비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남원 실상사(사적 제309호)
 -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 외
- (3) 신청내용 <연못 매립 및 수목 정비>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연못 매립 : 범종각 앞 연못 및 극락전 앞 연못을 흙과 돌로 메우고 바닥을 다져 사찰마당으로 정돈
 - 수목 정비
 - 이식 : 벗나무1, 백일홍2, 은행나무7, 신나무1, 배롱나무1, 노각나무1 → 실상사 주차장 가장자리 수로변
 - 제거 : 잣나무2, 호두나무1, 감나무7, 매실나무1, 전나무1, 능수버들2, 소나무2, 후박나무1, 느티나무2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의견(경상북도 문화재위원 ○○○)
 - 연못 매립
 - 현재 실상사 마당에 있는 연못은 원형적 요소가 아니고 근세에 만들어진 소지가 많아 매립하고 마당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 연못이 원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발굴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인근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음

- 특히 현재의 연못은 우리나라 전통조경양식과는 거리가 먼 형식을 보이고 있어 문화재 사찰인 실상사의 사격과 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매립되어 원형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실상사는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토지 이용이 논으로 된 곳이 많아 물이 많은 사찰임. 특히 경내에도 극락전 쪽으로 연못이 조성되어 있으며, 보광전 쪽에서 물길이 현재의 연못으로 연결되고 있어 다른 사찰에 비해 물이 많은 편임
- 이럴 경우 습기가 많아지고 밤낮의 기온이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봄, 가을철에는 안개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남. 이것은 목재건축물이 대부분이며, 단청이나 탕화와 같이 안료가 입혀진 경우에는 목재의 수축과 팽창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고, 안료가 벗겨지는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큼 따라서 경내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습량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연못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매립하여 습도를 줄여야 할 것임
- 연못을 매립한 후에는 마사토 포장을 하여 예전의 흙마당의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수목 이식 및 제거

- 현재 정비계획보고서에서 제안한 수목의 이식과 제거는 현재의 사찰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수목들에 대한 처리에 관련된 것으로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임
- 그러나 벗나무, 은행나무, 신나무, 노각나무, 배롱나무 등과 같은 이식대상 수목은 이식을 할 정도로 가치가 높아 보이지 않아서 재고하는 것이 좋겠음. 즉, 이식대상의 나무는 이식비가 많이 들어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식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수목이라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식대상 수목 가운데에서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없는 수목은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됨. 혹시 이 문제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제거수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기존 안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겠음.

(2) 종합정비계획 용역자 의견(성균건축도시설계원 소장 ○○○)

- 실상사의 수계는 동쪽으로 람천이 흐르고 있고 부지의 북쪽, 서쪽, 남쪽으로 모두 지류가 흐르고 있음. 북측 유구터 상단의 소하천과 서측의 관계농수로의 수위가 실상사의 유구터 및 경내 지반고보가 높기 이로 인해 부지 내부가 습한 부분이 많으며 홍수시 범람할 경우 배수처리가 잘 되지 않아 수해를 입을 우려가 많음

- 연못지에 물을 가두어 두지 말고 경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유구터가 습지화 되는 것을 막고 사찰내 배수가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실상사 목탑지 서편의 연못지는 시기별 항공사진 분석과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발굴조사의 결과를 통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유구터 확인 및 사역을 추정해 보아도 현 연못지는 근거가 없음
- 천왕문을 지나 보광전으로 진입시 오히려 사찰 경관을 저해함.
- 연못지를 메우는 것은 지반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연 지반으로 회복하는 의미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30.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윤○○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사적 제320호)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390-2번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문화재구역으로부터 3m 이격)
 - 대지면적 : 144㎡
 - 건축면적 : 81.2㎡
 - 규모 : 지상 1층, 높이 4.7m
 - 용도 : 단독주택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12.4/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지정구역에서 3m 정도 동측으로 이격된 곳에 높이 4.7m, 건축면적 81.2㎡ 규모의 주택을 재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재 1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재축 건물의 높이가 높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정구역과 연접하여 성내 위치하므로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시굴조사 후 사업시행

31. 나주읍성 주변 나주천변 저류지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주변 나주천변 저류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읍성 주변 나주천변 저류지 조성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적분과 제8차(2012.8.8) 심의 시 나주천 정비사업(노후교량 개선, 석축보강, 저류지 조성 등)이 부결되어 저류지 조성 사업으로 계획을 축소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2-20 외
- (3) 신청내용 <나주천변 저류지 조성>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삼도동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 사업내용
 - 축제 및 호안공 : 축제공 L=0.3km, 호안공 L=0.3km(전석쌓기 4,275m²)
 - 조경공
 - 식재 : 관목류 11,835주(산철쭉, 수수꽃다리, 희말채나무, 조팝나무, 화살나무)/초본류 38,960주(갈대, 수크령, 부처꽃, 털부처꽃, 금불초, 매자기, 구철초, 석잠풀, 맥문동)/교목류 147주(느티나무, 이팝나무, 홍단풍, 둥근소나무, 모과나무, 은행나무, 산뱀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소나무)/잔디식재 401m²
 - 조경시설 : 계류 및 연목(415m²), 테크(121m²), 생태관찰로(1,086m²), 지압 보도(154m²), 자연석 포장(937m²), 정자(31m²)

- 부대공
 - 휴양시설 : 원형파고라(147m²), 캐노피(30m²)
 - 편익시설 : 주차장(1,197m²), 스탠드(165m²)
 - 기타시설 : 사계절 스케이팅장(720m²)
 - 녹지 및 하천 : 녹지(8,600m²), 하천(4,387m²)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외래수종은 제외하고 수종식재 및 시설물은 문화재청에서 검토 후 사업시행

32.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적분과 제9차(2012.9.9.12) 심의 시 시굴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조건부 허가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2-20 외
- (3) 신청내용 <도로 개설>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서내동 111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m 이격)
 - 사업내용 : 서성문~나주천간 도시계획도로
 - 당초 : L=279.2m, B=8m / 오수관(P.E관) D300, 우수관(P.E관) D500 매설
 - 변경 : L=279.2m, B=14m / 오수관(P.E관) D300, 우수관(P.E관) D500 매설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33.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이천시 소재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천 설봉산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회의에서 3차례('11.9.7/'11.10.12/'12.2.8) “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었고, 지난달 사적분과 회의('12.11.14)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현지조사 실시 후 재부의하는 사항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양○○)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재결함('12.9.18.)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
- (2) 대상문화재명 : 이천 설봉산성(사적 제423호)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164-23, 164-24(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내용 (2011.9.7/부결)	2차 신청내용 (2011.10.12/부결)	3차 신청내용 (2012.2.8/부결)	4차(금번) 신청내용	비고
부지면적	8,647㎡	8,647㎡	5,225㎡	5,117㎡	108㎡ 감소
건축면적/ 연면적	1,339.2㎡	1,339.2㎡	583.1㎡	583.1㎡	
규모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3동	지상1층, 3동	
구조	철골조	철골조	철골조	철골조	
높이	5.6m	5.6m	5.5m	5.5m	
절토량	38,577㎥	23,732㎥	10,573㎥	10,573㎥	

※ 토지분할에 따른 필지 재획정으로 부지면적 108㎡ 감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1.2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이천 설봉산성에서 북측으로 470여m 이격된 1구역(원지형 보존 구역)에 구릉 성·절토에 의한 12.7~6.7m 규모의 옹벽을 설치하고 조성된 대지 위에 높이 5.5m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3개동(121.1㎡, 198㎡, 264㎡)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2012.09.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었지만 과도한 성·절토에 따른 지형의 변형이 크고 상당히 높은 옹벽이 설치되는 등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지형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동 사업 관련 행정심판 내용 및 결과

- 심판개요
 - 사건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2-09530
 - 청구인/피청구인 : 양○○ / ○○○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2.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청구이유
 - 청구인은 사적 제423호 설봉산성 인근 임야의 소유자로 '11.12월 근린생활 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하였으나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함
 - 사건임야 옆을 지나는 국도는 겨울철 상습빙판길로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약 280m의 감속차로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며,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의 허가사항을 규율할 뿐 동법 제36조의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것만으로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산성의 500미터 이내에는 송전철탑과 건물이 산재하여 주변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은 재량권행사를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심판 제기
- 재결내용(인용, '12.9.18.)
 -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임
 - ☞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나, 법령체계를 고려할 때 현상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는 문화재보존이라는 공익과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침해의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허용기준에 부합한다는 점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담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건 문화재의 동쪽과 남쪽에는 많은 건물 및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어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처분이 취소되면 인근 토지의 훼손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현상변경허가가 결정되었다고 하여 다른 토지에도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신청지를 개발하면서 감속차로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목적 또한 확보되어야 할 법익에 해당하므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성·절토를 조정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후 승인

34. 부여 화지산 유적 내 부여문화센터 외부공간 조성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 유적」 내에 부여문화센터 외부공간 조성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화지산 유적 내 부여문화센터(서동문화센터) 건립은 2010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시('10.9.8) 다음의 사항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됨
 - 발굴조사 후 발굴제도와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 서동문화센터 중 화장실 부분은 한옥구조로 함
- 부여문화센터 건물 외부공간에 주차장 및 광장, 녹지 등을 조성하고자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화지산 유적(사적 제425호)
 -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5번지 외
-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36-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식재공사 : 소나무 외 2종 상록교목 57주, 매화나무 외 3종 낙엽교목 19주, 사철나무 외 2종 관목 950주, 잔디(평떼) 370㎡
 - 시설물공사 : 앓음벽 외 3종
 - 포장공사 : 화강석블럭 663㎡, 황토포장 1,662㎡, 자연석판석 441.4㎡, 아스콘포장 313.88㎡, 보차도 경계석 136.52m 등
 - 우수수공사 : 우수관(D200) 29.3m, 우수관(D300~450) 107.5m, 플룸관 58m, 집수정 9개소, L형 측구 83.62m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아스콘포장은 잔디블럭으로 조정

35. 강화 외성 주변 통신용전주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통신용전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읍 용정리 지역의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하여 강화 외성 주변에 통신용전주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강화도)
- (3) 신청내용 <통신용전주 설치>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49-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콘크리트 전주(H=13.5m) 1개소 설치, 사용면적 3㎡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36. 서울 청계천 유적(오간수문지) 내외 횡단보도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461호 「서울 청계천 유적(오간수문지)」 내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청계천 유적 중 오간수문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오간수교(2005.9월 건설 /폭 59.9m, 연장 22.9m) 남단 상부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청계천 유적 (사적 제461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일원
- (3) 신청내용 <횡단보도 설치>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214(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규모 : B=8m, L=59.94m(차도부 27.5m, 녹지부 10.72m×2개소, 기존보도 5.5m×2개소)
 - * 오간수교 남측 상부 녹지대상에 복원된 화강판석 교각 흔적 1개소 철거 후 보도조성 및 횡단보도 설치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화강판석 교각 표시 보호를 위하여 강화유리 등 데크 설치

37. 완주 위봉산성 주변 풍류학교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사적 제471호 「완주 위봉산성」 주변 풍류학교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완주 위봉산성 주변 풍류학교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적분과 제11차('12.11.14) 심의 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완주 위봉산성(사적 제471호)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산7-4 외
- (3) 신청내용 <풍류학교 신축>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36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0m 이격)
 - 사업내용
 - 공연장 : 면적 158.76㎡, 높이 8.15m, 5량가, 박공지붕, 전통와가
 - 관리동 : 면적 84.51㎡, 높이 5.92m, 5량가, 팔작지붕, 전통와가
 - 화장실 : 면적 50.40㎡, 높이 4.95m, 3량가, 박공지붕, 전통와가
 - 주차장 : 1,135㎡(42대), 잔디블록포장(T=150cm)
 - 이벤트마당 : 718㎡, 잔디식재(줄떼)
 - 진입로 : 746㎡, 아스콘포장(T=15cm)
 - 석축쌓기 : H=0.4~3.1m, L=172.2m
 - 우·오수시설 : 집수정, 배수로, 산마루측구, 맨홀, PVC 이중벽관 등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05/문화재위원 ○○○)

- 풍류학교 계획부지는 위봉산성 아래 450m 이격된 곳에 위치하며 위봉산성에서는 수림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진입로에 바로 연결해 있어서 위봉산성 방문 시 쉽게 인지되는 위치임
- 부지는 마당이 형성되는 전면부에서 관리사 후면 대지경계선까지 10m 이상의 표고차가 있는 경사진 지형임
- 계획안은 성절토를 통해 지반을 조성하고 관리사와 공연장을 같은 축선상에 배치함으로써 지형의 변화가 심하며, 특히 공연장 건물 후면 2단의 축대는 높이가 5m 이상이 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며, 풍류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그에 맞는 건물계획과 배치 및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38.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고분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에서 고분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대릉원 일원 내에 고분공원을 개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 ※ 2012.09.12(사적분과 9차 위원회) 심의 부결
 - 사업내용 : 종각건립, 광장포장, 친수공간 조성 등
 - 부결사유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261 외 일원
- (3) 신청내용 <고분공원 조성>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30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종각 건축]

구분	당초('12.09.12 부결)	금회신청	비고
건축규모	지상 1층, 1동	좌동	
건축면적(연면적)	69.56㎡ (69.56㎡)	좌동	
건축구조	한식목조,기와(사모정)	좌동	
최고높이	10.4m	좌동	

[부대공사]

구 분	당초('12.09.12 부결)	금회신청	비고
잔디블럭 포장	3,690m ²	4,277m ²	
황토경화 포장	408m ²	321m ²	
점토벽돌 포장	491m ²	211m ²	
에코블럭	200m ²	-	
목재데크	30m ²	-	
친수공간, 실개천	214m ²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05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주 대릉원 일원(노동리 고분군) 문화재 구역 내에서 종각과 실개천 등의 내용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허가 신청하였으나 사전분과 9차 회의(2012.09.12)에서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에 의해 부결된 바 있음
- 금회 신청에서는 종각과 주변 광장을 포장하기 위하여 변경 신청한 건으로서 과거 대릉원에 종각이 존재하였다고는 하나 경주 대릉원 일원의 역사성과 연관성이 없고 인위적인 시설물로서 경주 대릉원 일원의 역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39. 여수 석보 내 배수로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내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석보 내 배수로 정비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여수 석보(사적 제523호)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880-11 외
- (3) 신청내용 <배수로 정비>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880-11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배수로 확장 : 길이 95m, 너비 2m, 깊이 0.7m
 - 평탄화 작업 : 길이 20m, 너비 10m, 깊이 0.2m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40. 여수 충민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충민사의 문화재구역이 2011.12월 일부 해제(2필지)되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 사적분과 제11차(2012.11.14) 심의 시 용도지역 확인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여수 충민사(사적 제381호)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808번지 외
- (3) 신청내용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현행)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불가 ○ 개 · 재축 허용 ○ 원지형 보존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 8m이하(2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 11m이하(2층 이하) 	개·재축 허용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 14m이하(4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 18m이하(4층 이하) 	
4구역	○ 여수시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상 작성범위는 200m임
- 해제된 2필지의 연접 구역이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3구역(최고높이 14m)로 되어 있으므로 해제 필지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관리해 나가면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구역의 경사지붕 허용높이도 여타의 허용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7m로 조정함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검토(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1m(2층)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7m(4층) 이하
4구역	○ 여수시 도시계획 층층 뚝 굴뚝 빌머뚝 짧춤.	
공통사항	✓ 깎춤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마. 참고사항

(1) 여수시 의견

- 해제된 2필지는 당초 충민사 지정구역의 맨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기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재구역만 변경하고자 함

(2)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규제내용	관련규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건축물 허용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문화자원보존지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문묘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 불가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

바.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 구성하여 검토

41. 수원 화성 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및 속초 조양동 유적(사적 제376호)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등 2인
- (2) 대상문화재명 및 소재지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 속초 조양동 유적(사적 제376호)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149 번지 등
- (3) 신청내용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수원 화성

구분	현행	조정신청(안)	비고
성외부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14m 18m	화성봉돈의 동측 주거지역 (구릉으로 차폐되는 지역)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11m 15m	동장대 북서측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3층이상))
	29~47m, 기승인구역(15층)	문화재 높이(21m)에서 양각 7° 적용	팔달문·장안문 주변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성내부	1구역 경사지붕 12m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내부 1구역(역사문화미관지구) 평지붕 건축행위 허용
공통사항	옥상녹화 기준 없음	건축면적 60%이상 녹화 기준 명시	옥상녹화의 구체적인 범위 명시

- 속초 조양동 유적

구분	현행	조정신청(안)	비고
6구역 <신설>	-	도시계획법 적용(자연 녹지지역), 단, 조양동은 무문토기 산포지 일원은 발굴조사 진행	6구역을 신설하여, 현 5구역 (자연녹지지역)의 일부를 편입 ※ 5구역 : 건축물 신축·증축 제한,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라.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42. 울주 언양읍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언양읍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3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하○○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198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2m)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건축면적 : 294㎡ / 167.79㎡ - 연면적 : 299.73㎡ - 규 모 : 지상2층, 최고높이 8.5m(경사지붕) -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구역
2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황○○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산48-1번지, 산46-3, 산79, 산47, 384-2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5m 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1,459㎡, 건축면적 272.5㎡, 연면적 545㎡, 1동, 지하1층 지상1층, 최고높이 7.15m,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구역(보존구역), 3구역
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박○○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10-7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5m 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1,441㎡, 건축면적/연면적 200㎡, 1동, 1층, 최고높이 4.5m,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1구역(보존구역)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12-043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15필지 2,275m²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 지정면적 : 684필지 292,902m²
 - 추가지정 신청면적 : 15필지 2,275m²
- (4) 신청사유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012.10.8)
 -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지하에 백제문화층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 따라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1-61	대	166	166		
2		155-23	대	231	231		
3		257-101	대	112	112		
4		176-7	대	178	178		
5		216-7	대	180	180		
6		222-35	대	116	116		
7		92-11	대	140	140		
8		140-34	대	148	148		
9		87-4	대	321	321		
10		93-6	대	142	142		
11		485-4	대	108	108		
12		222-61	대	152	152		
13		298-9	대	116	116		
14		131-24	대	102	102		
15		160-8	대	63	63		
합계				2,275	2,275		

2. 파주 율곡 이이 유적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경기도 기념물 제45호 「자운서원」 및 도 기념물 제15호 「이이선생 묘」 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이자 경제가인 율곡 이이선생을 배향한 자운서원 및 이이선생과 신사임당의 묘소가 포함된 가족묘역 일체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회의 시(11.14) ‘현재 발굴조사 중인 지역의 약보고서가 나온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으며, 파주시에서 자운서원 표본 시굴조사 완료약보고서가 제출되어 재부의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신사임당 묘(경기도 기념물 제14호/1973.7.10 지정)
 - 이이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15호/1973.7.10 지정)
 - 자운서원(경기도 기념물 제45호/1973.7.10 지정)
 - 자운서원묘정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7호/1978.11.10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5-1 외
-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대상 : 파주 율곡 이이 유적
 - 신청면적 : 58필지(316,854㎡)
 - 문화재구역 : 5,282㎡
 - 문화재보호구역 : 311,572㎡
- (4) 관리단체(안) : 경기도 파주시

(5) 신청사유

-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경제가인 이이는 퇴계 이황의 학문을 더욱 발전시켜 중국의 성리학과 차별되는 조선성리학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서 우리나라 정신사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임
- 파주 율곡 이이 유적은 이이선생을 배향한 자운서원과 이이선생 및 신사임당의 묘소를 포함한 가족묘역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율곡 관련 유적을 대표하는 곳으로 한 인물에 근원한 문화유산이 모인 장소성이 큰 의미가 있어 국가 사적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함

라. 자운서원 표본시굴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2.11.9~11.20(현장조사 7일 포함)
- 조사지역 : 자운서원 내 문성사 주변(1,750㎡)
- 조사기관 : (재)한백문화재연구원(단장 ○○○)
- 조사방법 : 1~1.5×3~10m 규모로 총6개소에 시굴트렌치를 설정한 후 원토층까지 굴착하여 토층의 퇴적상태 및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 확인
- 조사결과
 - 자운서원의 중심건물인 문성사의 남쪽 전면 하부에서는 창건 시로 추정되는 축대가 잔존하였다. 이 축대는 원토층을 정지하여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지대석이 잔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건물의 축선은 현재 문성사의 건물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현재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양쪽이 모두 약 7m의 길이가 확인되어 남북 중심축선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문성사 건물은 축대가 북쪽으로 약 50~100cm 가량 후퇴하였고, 동서 양쪽으로 각각 약6.5~7.5m 가량 확장되어 원래의 건물보다 북쪽으로 약간 이동되고 동시에 좌·우측으로 확대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 조선시대 문화층은 창건 시 축대로부터 북쪽으로 약 3m가량의 폭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이 층에서는 지붕에 올렸던 기와가 일시에 무너져 내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층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기와는 등문양이 청해파문과 무문으로 확인되었고 문양으로 보아 대개 조선중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하단-1Tr 에서는 축대 전면에서 '康熙 二十(七?)' 銘 명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마지막 글자가 일부 탈락되어 제작년도를 정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연호로 보아 숙종 7년~14년(1681~1688년)간에 제작된 기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기록을 검토해보면 자운서원 移建 이후 동·서재와 강당을 증축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사용되었던 기와였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 잔존유구와 출토 유물로 보아 현재 문성사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자운서원의 중심건물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건물은 초축 건물지와 거의 동일한 축선 상에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복원 과정에서 조선시대 문화층 일부가 유실되었고, 원 건물지에 비해 증축되어 북쪽으로 약간 이동하였으며 좌·우측으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 자운서원 원위치 및 배치에 대한 지자체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2.11.6)

〈통의도시연구소장 ○○○〉

- 1871년(고종 8년)에 훼손된 자운서원이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된 것은 군사정권 기간 중인 1971년 서원 터 사당지에 사우를 건립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97년에는 서원 터에 외삼문, 강당, 내삼문 등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에 지표조사, 발굴, 문헌 등을 통한 체계적 고증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상태이다. 또한 여러 가지 내용의 글들이 있지만 초기의 글로 서원의 위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 아쉽다. 그런데 서원 경내에 남아있는 수목을 조사 참고하면 조성년대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다행 이라고 생각한다.
- 서원 경내에 들어서면 강당 좌우로 느티나무 “쌍수가 배식”되어 있는데 배식방법도 전통 배식법이지만, 수령이 약 400년임을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창건 초기에 기념식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란 느티나무 묘목을 이식했다고 보아야 한다. 또 내삼문 안 경사지 위 문성사 앞 좌측으로 측백나무 한그루가 있는데 그것 역시 300년 이상을 상회하는 나무이다. 그 우측으로 나무가 서있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곳 역시 쌍수 측백나무를 심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바 아마도 효종 대에 사액되면서 심겨진 것이 아닐까 추측되며 이러한 배식 방법은 전통건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예이다.

바. 자운서원 노거수 수령조사 결과

수종명	흉고직경	추정 연령	비고
느티나무	175cm	446년	한국나무종합병원(주)
느티나무	185cm	427년	

사. 현지조사 의견('12.10.31/문화재위원 ○○○, ○○○, ○○○, ○○○, 전문위원 ○○○)

(1)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파주 지역은 율곡의 4대조 이명신이 파주 파평면 자운산 아래 율곡리에 세거를 마련한 곳으로서 여말선초 이래 세거하여 온 향촌세력과 16세기 이후 파주와의 연고를 찾아 서울에서 낙향한 사대부들에 의해 새로운 사족 세력이 형성되며 초창기 기호사림의 중요한 근거지가 된 곳임
- 율곡 이이 유적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5-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율곡과 신사임당의 묘소가 포함된 가족묘역 및 율곡을 배향한 자운서원, 서원의 역사를 담은 묘정비가 있음
- 자운서원과 이이선생 묘역 주변은 북측으로는 사방산 자락이 서남으로 이어져 뻗어 있으며 자운서원과 이이선생 묘역은 그 중심에 위치함. 자운서원과 이이선생의 묘역 진입을 위해서는 동측의 자운마을과 동문1리 마을을 지나면서 율곡기념관의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며, 그 동측으로 팔각형의 상당히 규모가 큰 율곡기념관과 율곡 교육연수원이 자운서원의 정남방향에 자리하고 있음

○ 연혁 유래 및 특징

- 자운서원은 1615년(광해군7)에 율곡의 제자 김장생(金長生, 호 沙溪 1548~1631)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음. 1650년 효종(孝宗)이 '자운서원(紫雲書院)'이란 사액(賜額)을 내렸으며, 1655년에 파주 목사(坡州牧使)에 부임한 민진량(閔晉亮, 九掘 1602~1671)이 자운서원의 사묘(祠廟)를 새롭게 단장하여 후학들을 권면하였음. 1695년에는 박세채(朴世采, 호 南溪 1632~1695)를 서원에 합향(合享)하였으며, 1713년(숙종 39)에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을 추가 배향함. 이후 영조·정조·순조 등 역대 임금의 자운서원에 승지를 보내 치제(致祭)하게 할 정도로 보살핌을 받음으로써 기호사림의 성지(聖地)가 되었음
- 1683년(癸亥, 숙종9) 자운서원 묘정비(廟庭碑)가 세워졌으며 이 비는 자운서원에 배향된 율곡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한편 자운서원의 건립 내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문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짓고, 당대의 명필인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이 예서체로 썼으며, 상단에는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전액(篆額)을 썼음
- 자운서원은 1871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철폐되었으나 1907년 관내 유림들이 자운서원 터에 단(壇)을 만들고 향사를 지냈음. 1950년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서원을 1968년부터 국비보조로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1970년(庚戌, 紫雲書院重修記, 默山 尹興秀)에 사당(편역은 文成祠, 丙戌 姜恩賢)을 복원하였으며 근래에 들어와서 강당(편역은 講仁堂, 丙戌 白巖 姜恩賢)을 복원하여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서원구조를 살리게 되었음

- 현재 건조물로는 사당·내삼문·강당·동서재·외삼문이 있으며, 석조물은 묘정비(廟庭碑)가 있고, 수목은 강당 전면 경사면에 수령 약 400년된 느티나무 2주가 있고, 사당의 동측 경사면에도 오래된 측백나무과의 향나무 1주가 있음. 사당 내부에는 중앙에 이이의 영정과 위패를 주향으로 모시고, 좌우에 김장생과 박세채의 위패를 병향함. 서원에서는 음력 8월 중정일(中丁日)에 제향을 올렸으나, 최근에는 파주시에서 울곡문화제(栗谷文化祭) 개최를 알리는 추향제례로서 양력 10월 초순에 지내고 있음
- 이이 선생의 묘역은 파주 자운산 서록(西麓)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풍수관에 따라 안장되었으며, 이곳은 이원수와 신사임당, 그들이 낳은 자녀, 출가한 여식의 시댁의 묘소까지 함께 위치하고 있는 특징적인 공간임
- 특히 역장(逆葬)으로 일컬어지는 매장방법이 눈길을 끄는데, 부모 묘소 위에 장자(長子)가 묻히고, 그 위에 삼남인 이이 선생이 묻혀 있는 것은 16세기 말까지는 월장이 일반적이었고, 이이의 맏아들이 조부모 묘소 밑에 묻혔다는 점에서 17세기 이후 장법(葬法)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이의 큰누이 매창의 시부모를 이 묘역에 모신 이후 누이 부부와 아들, 작은 누이 부부까지 한 곳에 모여 있음
- 이이 선생의 신도비가 묘소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이 신도비(神道碑)는 선생이 돌아가신 후 47년이 지난 1631년(인조 9년) 4월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은 이항복(호白沙, 彌雲, 1556~1618)이 짓고, 신익성(호樂全堂, 1588~1644)이 썼으며, 전액(篆額)은 김상용(호仙源, 1561~1637)이 썼다고 안내문에 기록되어 있음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 명칭 검토 : 파주 이이 유적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 상의 인물유적 명칭부여 원칙에 적합하도록 호를 제외한 ‘파주 이이 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 현재 지정구역으로 신청된 구역은 자운서원과 이이 선생 묘역을 포함한 사방산 일원으로서 시·도 기념물로 지정된 58필지 316,854㎡의 범위임.
- 이중 국유지와 사유지의 비율은 61647㎡로 19.4%, 사유지는 덕수이씨종중이 196,817㎡로 62.1%, 자운서원이 6,162㎡로 2.0%, 경기도교육감 50,267㎡ 15.9%로 공공 성격의 사유지이며, 1,961㎡의 0.6%만이 일반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음

- 율곡기념관은 율곡 이이와 관련된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율곡연수원은 규모가 크고 초·중등 교사의 직무교육으로서 사용되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율곡 사상과 관련된 교육 시설로서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설정에 있어서, 자운서원과 이이선생 묘역을 지정 구역으로 그 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 하였으나, 이이선생 신도비와 유적이 연결하여 있고 자운서원과 이이 선생 묘역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현 시·도 기념물로 지정 구역 전체를 지정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조선시대에 있어서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는 성학집요(聖學輯要), 동호문답(東湖問答), 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의 저술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이조판서 이이의 졸기(吏曹判書李珣卒) 등 48건의 기사가 수록된 것으로 보아서 인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임. 또한 이이의 신도비(神道碑)와 서원의 묘정비(廟庭碑), 강당 전면의 수령(樹齡) 약 400년의 느티나무, 이이 선생과 부인묘, 묘비(墓碑), 부모묘 등 가족 묘역이 서원과 일체화되어 연결하여 있는 사례가 드물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있음
- 파주 율곡 이이의 유적은 조선시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유적임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사적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으나, 율곡 이이를 배향하는 자운서원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나 전각의 배치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미흡하며, 1970년 사당이 재건될 때 본래 사당이 있던 자리를 택해 건물을 지었는지 사실 확인 여부도 필요하며 묘정비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묘역의 석물에 대한 조사, 검토를 통해 왜곡된 묘역의 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문헌자료, 학술자료 등의 보완에 의한 자운서원의 규모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고증자료를 확보, 이이 선생 묘역의 석물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자운서원의 발굴조사에 의해 유구를 확인함으로써 자운서원 터의 진정성을 확보한다면, 산청 조식 유적이거나 괴산 송시열 유적과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에 걸맞는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 사료되며 건물복원 및 다른 사항들은 지정 후 보완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아.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2005.10월 : 「파주 율곡 이이 및 신사임당 묘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신청
- 2006. 1월 :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결)
- 2006. 4월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경기도문화재전문위원 ○○○
- 조사의견 :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 의의는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문중의 묘역이 서원과 함께 조성되어 있어 율곡 선생의 묘역만을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2006. 5.19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부결)
- 2007.10.~2008.6월 : 율곡 선생 유적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한양대문화재연구소)
- 2011.05.12 : 「율곡선생유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신청(과주시⇒경기도)
- 2012.06.29 : 율곡 이이 학술대회 「율곡 이이의 사상과 파주유적지 재조명」
- 2012.10.09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신청(경기도⇒문화재청)

(2)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12.3.9) : 사적지정 신청 가결

(3)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 파주에는 윤관 묘가 성역화 되어 있는데, 윤관장군의 공적도 매우 크지만, 화폐에 오르지 못한 인물도 성역화 되어 있는데, 조선 최고의 사상가로서 화폐에 오른 인물의 묘역이 사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또한 자운서원도 영조와 정조가 자주 제사를 지내주었던 대표적 서원 가운데 하나인데, 퇴계의 도산서원은 사적지이면서 자운서원이 사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이번 사적으로 신청하는 파주 율곡이이 유적지는 이이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후기 기호지역 사대부의 정신적 성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 파주의 율곡유적지는 현재에도 그 뜻을 이어받아 자운서원은 율곡 선생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율곡문화제를 개최하여 추향제례를 봉행함으로써 율곡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있음. 이제라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경기도 문화재위원 ○○○>

- 자운서원은 고종 7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된 뒤 근래 들어서 원 모습을 되찾았기 때문에 건축 자체가 지닌 가치는 그다지 탁월하지 않으나 1970년에 문성사(사당)을 중건하고 나서 같은 해 경기도 기념물 제45호로 지정하는데에는 이유가 남달랐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판단함. 다시 말해, 자운서원의 건축이 지닌 연륜이나 특성은 크지 않다 해도 율곡선생을 기리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문화재지정이란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제대로된 발굴을 거쳐 고종 7년 이전의 모습을 고증한 뒤에 설계와 시공을 거쳤다면 복원의 가치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은 있으나 1920년에 복원한 문성사도 벌써 41년이란 연륜을 얻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자운서원을 호명산 아래에서 이곳 자운산 자락으로 이 건한 이유도 묘소와 근접한 곳에 서원을 마련하여 제향하고자 하는 후학들의 바람이 있었던 때문이 아닐까 함. 서원과 묘역, 그리고 율곡선생과 부모의 묘소가 집결한 이곳은 한 인물에 근원을 둔 문화유산이 모인 장소성에 큰 의미가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 4개소로 나뉘어 있는 이들을 합쳐서 일괄 사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율곡선생의 뜻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는 성지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고 나아가 문화유산이 지닌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

- 고종때 훼손된 후 복원되었고 서원의 규모나 주변의 연관된 역사문화유적이 자운서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략한 충북 괴산의 화양동 서원은 현재 사적 제417호로 지정되었으나 자운서원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이이선생과 사임당신씨가 남긴 역사문화적 가치는 유물이나 유적의 중요성도 있지만 정신사적으로 후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음. 또한 이이선생의 묘를 비롯한 덕수이씨 가족묘는 왕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양반가문의 묘제와 그 배경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유적으로서 그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음
- 이에 자운서원과 그 주변 이이선생 관련 유적은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일괄로 하여 국가 사적으로 한단계 높게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4) 파주시 주최 학술대회 개최 결과(요약)

- 가. 주제 : 율곡 이이의 사상과 파주 유적지 재조명 학술세미나
- 나. 일정 : 2012. 6. 29
- 다.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라. 발표내용

구분	발표자 및 발표내용
기조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 : ○○○(서울대 명예교수) ○ 주 제 : 중쇠기(中衰期)의 선각자 율곡 ○ 내 용 : 중쇠기의 선각자로서 율곡의 사상과 생애, 후세에 미친 영향을 역설하며 당파적 관점이 아닌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성장한 위인 율곡의 위대함을 논함
학술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주 제 : 율곡 이이의 생애와 사상 ○ 내 용 : 시대적 배경과 유학사상의 흐름을 통해 율곡의 생애와 사상을 새롭게 조명, 율곡이이의 묘소와 묘정비만으로도 국가사적의 가치가 충분함을 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주 제 : 율곡 이이 관련 유적과 자운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 ○ 내 용 : 자운서원은 서원 본래의 위치를 유지 계승하고 있고, 충분한 건축적 격식을 지니고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당위성 있음. 자운서원의 역사적 변천자료 확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 : ○○○(울산박물관 관장) ○ 주 제 : 율곡 이이 家族墓制의 특징 ○ 내 용 : 율곡선생유적지 성역화사업의 완성은 “국가사적 승격”에 있으며 자운서원 묘소만으로도 국가사적 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 : ○○○(한국과학기술대 건축공학부 교수) ○ 주 제 : 율곡 宗家 복원계획 기초연구 - 조선전기 서울·경기 사대부가의 건축특성 ○ 내 용 : 향후 본격적인 종가 복원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

(5)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면적: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성명	주소
1	법원읍 동문리	산5-1	임야	141,025	2,887	138,138		
2	법원읍 동문리	산6	임야	37,638		37,638		
3	법원읍 동문리	산6-1	도로	206		206		
4	법원읍 동문리	산25	임야	37,606		37,606		
5	법원읍 동문리	산25-1	임야	16,355		16,355		
6	법원읍 동문리	산25-3	임야	1,874		1,874		
7	법원읍 동문리	산25-6	임야	6,392		6,392		
8	법원읍 동문리	산25-7	도로	491		49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성명	주소
9	법원읍 동문리	산 156	도로	1,785		1,785		
10	법원읍 동문리	14	잡	298	43	255		
11	법원읍 동문리	15	잡	3,074	690	2,384		
12	법원읍 동문리	15-1	도로	218		218		
13	법원읍 동문리	15-2	하천	241		241		
14	법원읍 동문리	15-3	도로	50		50		
15	법원읍 동문리	16	잡	324		324		
16	법원읍 동문리	16-1	잡	615		615		
17	법원읍 동문리	17-1	잡	3,917		3,917		
18	법원읍 동문리	17-2	잡	281		281		
19	법원읍 동문리	17-3	하천	397		397		
20	법원읍 동문리	17-4	대	16,190		16,190		
21	법원읍 동문리	17-5	임야	1,506		1,506		
22	법원읍 동문리	18-1	잡	3,498		3,498		
23	법원읍 동문리	18-3	답	12,678		12,678		
24	법원읍 동문리	18-27	답	1,068		1,068		
25	법원읍 동문리	18-29	도로	188		188		
26	법원읍 동문리	18-36	도로	23		23		
27	법원읍 동문리	18-37	도로	79		79		
28	법원읍 동문리	18-38	도로	106		106		
29	법원읍 동문리	18-39	도로	89		89		
30	법원읍 동문리	18-40	도로	73		7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성명	주소
31	법원읍 동문리	18-41	도로	106		106		
32	법원읍 동문리	18-42	도로	410		410		
33	법원읍 동문리	18-44	답	102		102		
34	법원읍 동문리	18-45	답	23		23		
35	법원읍 동문리	18-46	도로	172		172		
36	법원읍 동문리	19-1	답	949		949		
37	법원읍 동문리	20-1	잡	2,331		2,331		
38	법원읍 동문리	20-6	답	83		83		
39	법원읍 동문리	21	대	298		298		
40	법원읍 동문리	22-1	도로	58		58		
41	법원읍 동문리	22-2	답	750		750		
42	법원읍 동문리	24-1	답	13		13		
43	법원읍 동문리	24-3	도로	63		63		
44	법원읍 동문리	26	대	4,936		4,936		
45	법원읍 동문리	26-1	도로	1,269		1,086		
46	법원읍 동문리	26-2	하천	1,180		1,180		
47	법원읍 동문리	26-4	하천	1,630		221		
48	법원읍 동문리	26-5	대	521		521		
49	법원읍 동문리	27-1	답	307		307		
50	법원읍 동문리	28-2	답	5,775		4,122		
51	법원읍 동문리	29-3	답	2,138		1,108		
52	법원읍 동문리	37	대	502		502		
53	법원읍 동문리	38	대	1,025		1,02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성명	주소
54	법원읍 동문리	39	잡	2,417	13	2,404		
55	법원읍 동문리	40	전	1,461	1,443	18		
56	법원읍 동문리	41	대	2,225	206	2,019		
57	법원읍 동문리	47-3	대	1,925		1,925		
58	법원읍 동문리	51-5	도로	175		175		
계				321,129	5,282	311,572		

(6) 사적(신청지) 지정면적 내 건축물 · 구조물 현황

연번	명칭	시대 (연대)	구조 형식/형태	수량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문성사	1972	목조	1동	법원읍 동문리 산5-1					
2	강인당	1997	목조	1동	법원읍 동문리 40					
3	입지재	1997	목조	1동	법원읍 동문리 15					
4	수양재	1997	목조	1동	법원읍 동문리40					
5	외삼문	1997	목조	1동	법원읍 동문리 15					
6	내삼문	1968	목조	1동	법원읍 동문리 40					
7	협문	1997	목조	1동	법원읍 동문리 41					
8	자운서원 묘정비	1683	석조	총높이 387cm	법원읍 동문리 40					
9	율곡 이이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10	율곡 이이의 부인 곡산노씨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11	율곡 이이의 말형부부 이선과 곽씨 합장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연번	명칭	시대 (연대)	구조 형식/형태	수량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	울곡 이이의 부모 이원수와 신사임당 합장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13	울곡이이의 만아들 이경임 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14	울곡 이이의 큰노님 매창의 시부모 조건과 이씨 합장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15	매창의 둘째 아들 조영 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16	울곡 이이의 8대손 이목 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17	울곡 이이의 둘째 매부 윤섭 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18	울곡 이이의 5대손 이계의 부인 김씨 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19	울곡 이이의 장손 이재와 부인 정씨 쌍분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20	울곡 이이의 둘째 부인 김씨 묘	조선 시대	무덤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21	여현문		목조	1동	법원읍 동문리 16-1					
22	이이선생신도비	1631	석조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계				22						

자.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명칭은 “과주 이이 유적”으로 함

3. 대전 미륵원지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대전시 기념물 제41호 「미륵원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려 말~조선 초 대전 지역의 회덕 황씨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설 사혜시설인 미륵원지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미륵원지(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1호/2005.9.6 지정)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마산동 135-2번지
-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대상 : 미륵원지
 - 신청면적 : 1필지(978m²)
 - 문화재구역 : 978m²
- (4) 관리단체(안) : 대전광역시
- (5) 신청사유
 - 미륵원지는 고려말 황윤보에 의해 건립된 후 약 150년간 회덕 황씨가 의 적선에 의해 운영된 유적으로 대전 최초의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한 민간 기관이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정신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 국가 사적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함

라. 현지조사 의견('12.11.20/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미륵원지는 과거 삼남(三南)과 서울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였다고 함.

- 현재는 대전 시내에서 가양비래공원을 거쳐 대전터널을 지난 후 대청호수길을 따라 약 20분간 가다보면 이정표가 나타나고 이정표를 따라 자동차로 5분 정도 더 가면 산록에 서향으로 미륵원지가 자리하고 그 주변에 관동묘려가 위치하고 있음.
- 미륵원지는 대전시 동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동구의 동쪽에 위치하며, 북쪽은 직동, 남동쪽은 대청호 수몰지역, 대청호 건너 동쪽에는 내탑동이 이웃해 있고 그 밖에 효평동, 용계동과 인접해 있으며 대부분 산으로 둘러싸인 입지를 가지고 있음.

○ 연혁 유래 및 특징

- 미륵원지는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목은 이색의 『미륵원남루기』에 의하면 고려말 황윤보(黃允寶)에 의해 중건되어 여말선초 회덕황씨의 적선(積善)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행려자(行旅者)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활동에서 점차 사회구조 및 봉사활동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7년도에 발굴조사를 통해 그 터가 현재 대전시 기념물 제41호(2005.09.06)로 지정되어 있음.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 명칭 검토 : 대전 미륵원지
 - 현재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주 혜음원지(坡州 惠蔭院址)를 고려할 때 문화재명은 지역명에 유적명을 더한 대전 미륵원지(大田 彌勒院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 현 지방 기념물인 미륵원지의 면적으로 지정면적을 검토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원(院)은 국가에서 운영하던 국립 숙박시설로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1,300여개의 존재가 확인되나 과주 혜음원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이름만 전해오고 있으므로 원(院)의 기능이나 역할, 위상 등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금회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 신청된 미륵원지는 기문·제영 등의 기록에 의한 회덕 황씨의 사설 시혜시설로서의 의미는 고려할 만한 가치를 가진다고 사료되나, 발굴조사 결과나 현황의 유구·유물을 고려할 때 회덕이라는 장소에 미륵원의 존재만 확인될 뿐 미륵원의 규모나 형태를 알 수

없고 현재의 터가 미륵원이라는 확실적인 유물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지정 사적으로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인 문헌과 유구·유물·역사적 위상 등의 관점에서는 균형감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존하는 남루 등의 건물은 1980년에 증건한 건물임.

- 또한 대청호 수몰에 의해 미륵원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재 민가가 들어서면서 주택, 담장 등에 의해 유구는 거의 훼손된 상태로써 유구의 잔존 현황도 미륵원지라는 의미를 살리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짐.
- 이에 따라 향후 터의 온전한 형태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대전 지역에서 회덕 황씨가 베풀었던 선정을 기념하는 대전광역시 지정 기념물로서 보존 관리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1977.11월 : 미륵원지 발굴조사(충남대학교 박물관)
- 2005. 9월 : 대전광역시 기념물 지정
- 2009. 2월 : 미륵원지 복원정비계획 수립(○○○)
- 2012. 1월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 2012.10월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2)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2012.9.13) : 사적 지정 신청 가결

(3)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2012.8.13~14)

- ○ ○ ○ [전]문화재청 감정위원 /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 ○ ○ [전] 국립대구박물관장 / 백제문화재연구원 이사장]
- ○ ○ ○ [전]문화재청 감정위원 / 충남대학교 충청학연구소 연구교수]
- 미륵원지는 선초 여행객에게 무료 숙실을 제공하던 곳으로 이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은 풍부하며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 현재의 원지는 1977년에 발굴을 실시하여 주초, 축대 옛길 등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고려말 선초의 미풍을 고양하는 측면에서 실체가 확인되는 유적이므로 국가지정으로 추진하며 복원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대전시 주최 학술대회 개최 결과(요약)

- 주 제 : 미륵원의 역사와 회덕황씨
- 일시/장소 : 2007.4.27./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 발표내용 및 담당자

제 목	발표자(당시 소속)
여말선초 회덕황씨가의 인물과 후덕지풍	○○○ (한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미륵원의 유래	○○○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미륵원 관련 기문의 문학적 검토	○○○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미륵원지의 발굴조사와 미륵원 복원	○○○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5)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면적: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전광역시 동구 마산동	135-2	대지	978	978		
계				978	978		

바. 의결사항

○ 부결

- 사적 지정 가치 미흡

4.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신설고속도로 교량경관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 교량 경관설계에 대해 협의 요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2011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회의(10.12)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완료되었음
 - * 조건사항 : 현충사 진입도로의 종단개량, 보도개설, 수목식재 등은 현충사 관리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
- 한국도로공사는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900m, 현충사 본전에서 약 2km 이격된 곳에 위치하는 교량(탕정1교)이나 2012.5월 교량 경관설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동 사안에 대하여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6.13)에서 ‘계획 교량이 현충사 본전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의견으로 검토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현충사 본전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고속도로의 지하화, 노선변경이 불가하여 본전에서 조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경관순응형 교량계획을 수립하고 재차 의견을 요청해 온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아산 이충무공 유허(사적 제155호)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번지
- (3) 신청내용 <탕정 1교 경관설계 검토>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 사업내용
 - 교량현황
 - 교량명 : 탕정1교
 - 규 모 : 연장 923m, 폭 24.3m

- 경관순응형 교량 계획
 - 기본방향
 - 주변 농촌 경관과 조화되는 경관 순응형 형식 적용
 - 현충사에서 조망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경관 형성
 - 구조물 노출의 최소화를 통해 주변과 연계된 미관성 확보
 -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로계획
 - 조치방안
 - 교량 주변 수목식재로 구조물 노출 최소화
 - 교량 높이 최소화(약 1m 감소)

라. 참고사항

(1) 현상변경허가('11.10.14) 내용

- 총연장 : 20.95km (현상변경 구간 : 1km)
- 지하차도 : 560m (박스형 60m, U타입 500m)
- 이순신대로 종단개량 : L=660m, H=0~2.85m
- 현충사 진입로
 - 종단개량 : L=454m, H=0~2.85m
 - 보도, 자전거도로 : L=454m, B=5m
- 부채도로
 - 마을진입로 이설 : L=248m, B=6m (기존 4.5m)
 - 농로이설 : L=450m

(2) 현지조사의견('11.09.29/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아산 이충무공 유허 남측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6m 이격된 곳에 당진~천안 4차선 고속도로(2공구)를 신설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건임
- 고속도로 신설 위치는 지방도가 위치한 현충사 입구 3거리 근처로 560m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중 60m 구간은 박스형으로, 500m 구간은 U타입 구간으로 지하화 하여 도로 옆면은 복토 후 수목을 식재하여 고속도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어, 아산 이충무공 유허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충사 진입도로에 대한 종단개량, 보도개설, 수목식재 등은 현충사 관리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도로, 교량의 차폐 수중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

5. 서울 탑골공원 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등 8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등에 따라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등 8개 사적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및 향후계획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등 8건
 - 소재지 : 붙임 참조
- (3) 검토내용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및 향후계획>
 - 적정성 검토(안)

연번	소재지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면적 (㎡)	조정면적 (㎡)
1	서울 종로	354	서울 탑골공원	14필지 15,051	8필지 12,152
2	충남 부여	249	부여 송국리 유적	274필지 535,107㎡	278필지 546,908
3	충남 부여	420	부여 능안골 고분군	20필지 164,701	28필지 187,530
4	충남 공주	13	공주 송산리 고분군	122필지 308,800	123필지 308,929
5	충남 공주	433	공주 장선리 고분군	22필지 51,585	23필지 52,514
6	경북 성주	86	성주 성산동 고분군	116필지 726,261	116필지 726,261
7	경남 창녕	14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249필지 460,011	246필지 456,998
8	제주 제주	416	제주 삼양동 유적	27필지 18,363.4	27필지 18,362.7

○ 향후계획

- '12. 12월 : 소위원회 개최
- '13. 1월 : 관보공고(30일 이상), 의견수렴
- '13. 2월 :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조정 고시
- '13. 2월~ :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라.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 보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12-12-048

1. 창경궁 내 조립식 매표소 설치 사업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 「창경궁」 정문 주변에 매표창구 증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표소 설치사업 계획을 보고 합니다.

나. 보고사유

- 창경궁은 급증하는 관람객 수에 비하여 매표소 공간(매표창구 2개소)이 협소하여 창경궁 정문 주변에 매표소를 설치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 ※ 2011년, 2012년 하반기 야간개방 관람객 수 비교표

년도별	2011년	2012년	증가율
관람객수(명)	6,787	33,427	493%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창경궁(사적 제123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 218,148㎡
- (3) 신청내용
 - 공사내용 : 조립식 매표소 제작 및 설치
 - 규 격 : 7,300mm×4,100mm×2,900mm, 갈바늄 우레탄 도장
 - 위 치 : 홍화문 외부 좌측
 - 소요예산 : 약 22,000천원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내외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5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 등	충청남도 부여군	○○○	<p><숲 가꾸기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산27 외 13필지(문화재구역 내외) ○사업내용 : 천연림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928,600㎡ - 제거율 : 28% - 산물수집 : 1.55ha - 산물임내정리 : 2.61ha - 나무베기 작업물량 : 32,965그루 ·상수리나무 9,560그루, 소나무 8,571그루, 리기다소나무 4,615그루, 아까시나무 2,967그루, 해송 989그루, 벗나무 659그루, 신갈나무 659그루, 밤나무 330그루, 기타 4,615그루 	허가	'12.12.04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등	○○○	<p><서울 한양도성 시설물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청운대~청풍암문, 소나무 군락지, 숙정문, 말바위안내소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바위안내소 화장실 설치 ·안내소 하부에 무방류순환식 화장실 설치 : 시스템 6인조 ·진입부 목재데크 설치 : 적삼목-무절, 1,200×1,500, 16경간) - 청운대~청풍암문 석축 공사 ·신규 모노레일 설치 및 해체 150m, 기존 모노레일 임대 및 해체 500m ·잔존 석축을 연결하여 석축 설치 : 33.3m - 숙정문 보수 공사 ·문루 우물마루 및 협문 부식재 교체, 고사목 제거 - 소나무 군락지 보호 공사 ·목재난간 설치(W=1.5m, 68경간), 쥐똥나무 보식(500주), 관석다짐(생석회다짐 300㎡), 야면석 쌓기(L=31.7m), 안내판 5개소 설치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운대~청풍암문 석축 보강구간 시굴 조사 선행, 말바위안내소 하부 화장실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 강구 	조건부 설계승인	'12.12.0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충청남도 아산시	양○○	<p><농업용 관정 개발></p> <p>○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20-3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0m 이격)</p> <p>○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용수량 : 10톤/일 - 착정공사 : D6", 100m - 수중모터펌프 : 1HP(설치심도 70m) - 상부 보호공 설치 : 1.3m*1.3m*1.0m - 지하 100m 굴착 	허가	'12.11.23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전라북도 남원시	○○○	<p><진입로 개설></p> <p>○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3-6 (문화재구역)</p> <p>○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허가한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부지의 진입로 개설 추가 - 규모 : L=80M, W=1.5M - 기존 지형 면고르기(성,절토 없음) <p>○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템플스테이 부지 협문까지 진입로를 연장하도록 함. 	허가사항 변경허가	'12.12.04
사적 제391호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전라북도 고창군	○○○	<p><운곡습지 생태복원사업></p> <p>○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407 (문화재구역과 연결)</p> <p>○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7,842㎡(L=2.13km) - 생태탐방로 복원, 비오톱 및 부대시설 <p>○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자는 기존형태로 설치 	조건부 허가	'12.12.10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